

★ ◎

본부장 방침 제435호

문서번호	설계품질혁신팀 3343
보존기간	10년
결재일자	2015.11.09
공개여부	공개
일상감사	대상

팀 원	설계품질혁신팀장	서비스혁신처장	건설사업본부장			
임경준	조진래	이우필	장달수	11/09		
협조	팀 원	이원철	건축설계1팀장	안병기	건축설계2팀장	백경희
	팀 원	최용석	건축사업팀장	김용섭	계약심사TF팀장	곽홍준
	도시재생팀장	조대원	희망재생팀장	김병석		

일상	No. 980	감사	의견
감사	2015/11/09	나용환	의견없음

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개정(안)

서울특별시 SH공사
(설계품질혁신팀)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612호(2013.10.21.)로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이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으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공사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을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으로 개정코자 함.

I 관련근거

- 주택법 제21조(주택건설기준 등)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(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)
-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(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)
-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612호, 2013.10.21.)
-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(안)(본부장 방침 제41호, 2012.01.19.)

II 검토내용

- 관련 법규 및 기준 개정 현황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	<p>제64조의2(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)</p> <p>① 1,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대 내의 실내공기 오염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.</p>	<p>제65조(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)</p> <p>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대 내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12.4.></p>
건강 친화형 주택 건설 기준	<p>● 최소기준(의무기준) 7개 항목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건축자재 및 불박이 가구는 「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규정」에 따른 주택성능평가 항목 “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제품의 적용” 항목에서 1등급(★★★★)을 획득 2. 페인트 등 건축자재에 함유된 납(pb), 카드뮴(Cd), 수은(Hg) 및 6가크롬(Cr+6)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 4. 공사를 완료하고, 입주전에 “청정건강주택의 건설을 위한 환기기준”(별표2)에 따라 환기(Flush out) 5. 「주택성능등급인정 및 관리규정」에 따른 	<p>● 의무기준 6개 항목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. 실내에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별표 1에 따른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자재 기준에 적합 나. 실내마감용으로 사용하는 도료에 함유된 납(pb), 카드뮴(Cd), 수은(Hg) 및 6가크롬(Cr+6) 등의 유해원소는 환경표지 인증기준에 적합 2. 각종 공사를 완료한 후 입주자가 입주하기 전에 별표 2에 따라 플러쉬아웃(Flush-out)을 실시 3. 효율적인 환기를 위하여 별표 3에 적합한 단

<p>주택성능평가 항목 “단위세대의 환기성능 확보”에서 2등급(★★★) 이상을 획득</p> <p>6. “환기설비의 성능검증(TAB) 시행기준”(별표3)에 따라 환기설비의 성능검증을 실시</p> <p>3. 청정건강주택을 건설하는 자는 “청정건강주택의 시공·관리기준”(별표1)에 적합하도록 시공관리</p> <p>7. 실내공기 오염물질이 과다 방출되는 접착제 시공방법을 개선하기 위한 준수사항</p>	<p>위세대의 환기성능을 확보</p> <p>4. 설치된 환기설비의 정상적인 성능 발휘 및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른 성능검증 실시</p> <p>5. 입주 전에 설치하는 친환경 생활제품의 적용 가. 빌트-인(built-in) 가전제품은 별표 5 제1호에 적합할 것 나. 붙박이가구 등은 별표 5 제2호에 적합할 것</p> <p>6. 건축자재, 접착제 등 시공·관리기준 가. 일반 시공·관리기준 나. 접착제의 시공·관리기준 다. 유해화학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도장공사 시공·관리기준</p>
<p>● 권장기준 7개 항목(3개 이상 충족)</p> <p>1. 오염물질 방출량이 우수등급 이상인 빌트-인(built-in) 생활제품의 설치</p> <p>2. “별표4”에 표시된 양호수준이상의 흡방습량을 갖는 흡방습 건축자재의 적용</p> <p>3. “별표4”에 표시된 양호수준 이상의 흡착 성능을 갖는 흡착 건축자재의 적용</p> <p>4. “별표4”에 표시된 우수등급 이상의 항곰팡이 성능을 갖는 건축자재의 적용</p> <p>5. “별표4”에 표시된 우수등급 이상의 항균 성능을 갖는 건축자재의 적용</p> <p>6. “유해화학물질 확산방지를 위한 도장공사 시공기준”(별표5)의 내용을 준수하여 시공</p> <p>7. 흡착률 30퍼센트 이상의 흡착보양재 사용</p>	<p>● 권장기준 4개 항목(2개 이상 충족)</p> <p>1. 흡방습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1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 총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적용</p> <p>2. 흡착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2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거실과 침실 벽체 총 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적용</p> <p>3. 항곰팡이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3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발코니·화장실·부엌 등과 같이 곰팡이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적용</p> <p>4. 항균 건축자재는 모든 세대에 별표 6 제4호에 적합한 건축자재를 발코니·화장실·부엌 등과 같이 세균 발생이 우려되는 부위에 총 외피면적의 5퍼센트 이상을 적용</p>

III 검토결과

● 관련 법규 및 기준 개정사항 반영

- 적용대상 변경 : 1,000세대 이상 → 500세대 이상

- 의무기준 : 전부 반영
- 권장기준 : 투입 원가 대비 효과가 높고, 현장 적용이 용이한 항균, 항곰팡이 건축자재 적용 반영
- 목재제품(수납가구, 마감재, 바닥재, 목재창호)
: 현행 기준[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(안)] 유지하여 친환경 성능 확보

● 적용(안)

구분		적용(안)	비고
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	적용대상	500세대 이상, 방침일 이후 사업승인신청분	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
	의무기준	의무기준 1. 친환경 건축자재의 적용	의무적용 대상
		의무기준 2. 플러쉬아웃(Flush-out) 실시	
		의무기준 3.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	
		의무기준 4. 환기설비 성능검증	
		의무기준 5. 입주 전 친환경 생활제품 적용	
		의무기준 6. 건축자재, 집착제 등 시공·관리기준	
권장기준	권장기준 3. 항곰팡이 건축자재 적용	흡방습, 흡착 건축자재 대비 원가상승 부담이 적으며 현장 적용이 용이 [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(안) (본부장 방침 제41호, 2012.01.19.)]	
	권장기준 4. 항균 건축자재 적용		
수납가구 KS기준	수납가구, 마감재, 바닥재, 목재창호	E0 등급 적용	[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(안) (본부장 방침 제41호, 2012.01.19.)]

IV 행정사항

- 해당분야 관련 시방서 개정 : 기전설계팀
- 해당 항목 일위대가 작성 : 계약심사TF팀
- 방침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토록 해당팀에 통보

붙임 1.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-612호)
2. 청정건강주택 건설기준(안). 끝.